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50 호 2020. 8. 27.(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1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50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5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991호[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결산)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993호[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0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검진비 및 직원단체보험 지원

제9조제3항 중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0년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2020.6.)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직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조항 신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150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허가기간	면적면적 (m ²)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20.08.20.	제2020-10호	김임분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08번길 5-6	울산광역시 복구 장재길 82	'20.8.20. ~'22.5.7.	변경 전	10 (120mm*2개)	활어도소매업 운영	하수인수 관로 개수변경
						변경 후	5 (120mm*1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5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중산동 633-1 외 2필지(633-2, 634)	산업로 1660	2020. 8. 2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991 호

2020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결산)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0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결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우리 구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20억원으로, 전년대비 1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2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54천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82억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3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69억원) 보다 3,04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27억원)보다 50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99억원)보다 1,817억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386억원)과 비교하여 2,903억원이 적습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고, 채무가 없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홈>정보공개>재정(결산)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호은(052-241-7115) 이메일 : she2011@korea.kr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993호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26 팩스번호 : 052)241-801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토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m ²)			
건물 현황	규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small>(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small>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